

[서식 예] 지급명령신청서(임금 및 퇴직금청구 독촉사건)

지 급 명 령 신 청

채권자 ○○○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채무자 주식회사 ◇◇◇◇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대표이사 ���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임금 및 퇴직금청구 독촉사건

청구금액: 금 7,500,000원

신 청 취 지

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7,5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○○. ○○. ○○.부터 20 ○○. ○○. ○○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 및 아래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.

아 래

금 원 독촉절차비용

내 역



 금 원
 인 지 대

 금 원
 송 달 료

신 청 이 유

- 1. 채권자는 20○○. ○. ○.부터 20○○. ○○. ○.까지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소재에서 식육 도소매업을 하는 피고회사에서 유통판매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, 20○○. ○월분부터 ○월분까지 체불임금 5,500,000원과 위 기간동안의퇴직금 2,000,0000원 등 합계 금 7,500,000원을 지금까지 지급을 받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.
- 2.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체불임금 5,500,000원과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 2,000,000원 등 합계 금 7,5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한 다음날인 20○○. ○○. ○○.부터 14일째 되는 날인 20○○. ○○. ○○.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.

첨 부 서 류

1. 체불 임금등 · 사업주확인서

1통

1. 송달료납부서

1통

 20○○.
 ○○.
 ○○.

 위 채권자
 ○○○
 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지방법위 귀중



당 사 자 표 시

채권자 〇〇〇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채무자 주식회사 ◇◇◇◇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대표이사 ���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임금 및 퇴직금청구 독촉사건

청구금액: 금 7,500,000원

신 청 취 지

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7,5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○○. ○○. ○○.부터 20 ○○. ○○. ○○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 및 아래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.

아 래

금 원 독촉절차비용

내 역

금 원 인 지 대



금 원 송 달 료

신 청 이 유

- 1. 채권자는 20○○. ○. ○.부터 20○○. ○○. ○.까지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소재에서 식육 도소매업을 하는 피고회사에서 유통판매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, 20○○. ○월분부터 ○월분까지 체불임금 5,500,000원과 위 기간동안의퇴직금 2,000,0000원 등 합계 금 7,500,000원을 지금까지 지급을 받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.
- 2.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체불임금 5,500,000원과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 2,000,000원 등 합계 금 7,5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한 다음날인 20○○. ○○. ○○.부터 14일째 되는 날인 20○○. ○○. ○○.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.

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소 멸 시 효 기 간	○○년(☞소멸시효일람표)
제출부수	신청서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	관 련 법 규	민사소송법 제462조 내지 제474조
불복절차 및 기 간	(신청인(채권자)) · 신청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함(민사소송법 제465조 제2항). (피신청인(채무자)) ·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(민사소송법 제470조) ·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470조)		
비 용	·인지액:○○○원(☞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) ·송달료: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)		
의 의	금전, 그밖에 대체물(代替物)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 령을 할 수 있음. 다만,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(민사소송법 제462조).		
지 급 명 령 과 집 행(민 사 집 행법 제58조)	령 정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지급명령 정본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		
기 타	·근로기준법이 일부 개정(법률 제7465호, 2005.3.31.)되면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(현행 제37조) 부분이 신설되어, 2005.7.1. 이후 퇴직및 사망 등으로 인하여 '근로관계가 종료된'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된 날(15일째)부터 지급일까지 연20%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게 됨. 다만,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관한특례법 등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음.		



- ※ (1)관할법원(민사소송법 제463조, 제7조 내지 제9조, 제12조, 제18조)
 - 가.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
 - 나.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
 - 다.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
 - 라. 어음 · 수표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지급지의 법원
 - 마.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
 - 바.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. 선박 또는 항 공기의 충돌이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에 관한 소를 제기 하는 경우에는 사고선박 또는 항공기가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.